

의안번호	2217285
의 퇴 인	고민정 의원
회 답 일	2026.06.11.
추 계 번호	26C129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③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5,800만원, 2031년 6억 7,300원 등 향후 5년간 총 32억 7,500만원(연평균 6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34	—	—	—	—	34	6.8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28.8	28.8	28.8	28.8	28.8	144	29
실태조사(안 제10조)	595	607	619	632	644	3,097	619
합계	658	636	648	660	673	3,275	655

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항)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의무규정
2	안 제8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9조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제1항)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복지·건강·상담 등 유사한 성격을 심의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9조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1.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2. 제14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3. 제15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4. 제16조에 따른 학생회복지원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5. 제17조에 따른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설치 또는 지정 6. 제18조에 따른 지정취소 7. 그 밖에 위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 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 행동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1조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4조 (학생마음건강진흥원)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 행동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중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2.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연구 등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3. 제13조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상담 활동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제3항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의 운영 지원 5. 관련 정책 및 사업 홍보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6. 그 밖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 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4조 (학생마음건강진흥원)	(제2항) 국가는 중앙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교육감은 중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고 지역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지역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국가는 지역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안 제16조 (학생회복지원기관)	(제1항) 교육감은 마음건강 회복 또는 정서행동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치료·전문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하 “학생회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15조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제1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없거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학교 상담 활동 개선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 등 상담 활동 지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하 “지역 유관기관”이라 한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3. 병원·의원 및 지역 유관기관과 학교 간 연계 지원 4. 그 밖에 지역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9	안 제17조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 등)	(제4항) 교육감은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9조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제2항) 교육감은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1	안 제20조 (교원의 연수지원 등)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등 이 법에 따른 학생 지원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정지출 증가분에 대한 산출이 곤란함
2	안 제8조 (기본계획 수립 등)	○	
3	안 제9조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	
4	안 제10조 (실태조사)	○	
5	안 제11조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	· 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해당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5년 사회정서교육을 도입·운영 중임 · 또한, 2026.1.29.자로 에듀넷 내에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를 개통하여 학교급별 맞춤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에 따른 사항은 기존에 실시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
6	안 제14조 (학생마음건강진흥원) 안 제15조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안 제16조 (학생회복지원기관) 안 제17조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 등)	×	·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마음건강진흥원의 설립,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설치, 정서행동문제 학생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전문가 등의 업무 수행 지원을 규정함 · 교육부는 학교, 교육청, 전문기관 등 연계를 바탕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교내 위 클래스 9,406개, 교육지원청 단위의 위센터 208개, 교육 및 치료 전문기관인 병원형 위센터 19개 등이 설치되어 학생 지원,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유사 취지의 기존 사업이 존재하여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9조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	· 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조력인을 지정·지원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이 시행되어 조력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조력인의 구성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10	안 제20조 (교원의 연수지원 등)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 마음건강증진 등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2025)을 바탕으로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양성을 추진하였으며, '26년 2월 1,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음 · 위와 같이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현행 사업이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분만을 분리하여 추계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②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③실태조사(안 제10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8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 교육부의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9조)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추계
 - － 참석 수당을 제외한 부대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로 충당된다고 가정하고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0조) 교육부의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습·복지·건강 등 사업을 조정·연계하는 재구조화 사업임
 -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의 성격 및 목적이 제정안과 유사하여 이를 준용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400만원으로 추계

[표 2] 교육부의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소관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교육부	2020	40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부	2020	30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	교육부	2021	30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2021	36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표 3]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34	-	-	-	-	34	6.8

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억 4,400만원(연평균 2,880만원)으로 추계
- 위원회가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된다고 가정하고 산출
 - (위촉위원 수) 제정안의 규정 및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참조하여 위원회 정원 10명 중 위촉위원은 6명으로 가정
 - 제정안 규정을 참조하여 위원회의 정원은 10명으로 함
 - 제정안의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의 당연직 위원 정수(4명)를 준용하여 위촉위원 수는 정원에서 당연직 위원 수를 제외한 4명으로 가정
 - (참석 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15만원으로 하되,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 부산, 울산 등은 참석 수당을 10만원으로 하고,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함
 - (회의 횟수) 시·도학생맞춤통합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연 2회로 함
 -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은 시·도학생맞춤통합위원회의의 정기회의를 반기마다 한 차례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표 4] 추계결과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교육청 수(A, 개)	16	16	16	16	16	-	-
위촉위원 수(B, 명)	6	6	6	6	6	-	-
참석 수당(C, 만원)	15	15	15	15	15	-	-
회의 횟수(D, 회)	2	2	2	2	2	-	-
추가재정소요 (E=A×B×C×D, 백만원)	28.8	28.8	28.8	28.8	28.8	144	2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시·도위원회의의 운영) ③ 시·도위원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도위원회의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 실태조사(안 제10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0억 9,700만원(연평균 6억 1,900만원)으로 추계
 -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으로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이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
 - 실태조사 주기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를 준용하여 1년으로 가정

[표 5]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10조)	595	607	619	632	644	3,097	619

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